

시 민

주무관	복지정책과장	복지정책관	복지건강실장	행정1부시장
박진용	최홍연	이충열	강종필	12/14 김상범
협 조	보건정책관 예산1팀장 자산관리과장 행정과장 복지정책팀장			代박유미 강석 이해경 황인식 윤재삼

문서번호	복지정책과-32356
결재일자	2013.12.14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행정1부시장 방침 제528호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「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
최웅식의원 발의 조례(안) 검토보고

2013. 11.

복 지 건 강 실
(복지정책과)

사전 검토항목

:::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
시 민 참 여 고 려 사 항	● 시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전 문 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음 브 즈 만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법 령 및 기 타 고 려 사 항	● 법 령 규 정 : 교통 <input type="checkbox"/> 환경 <input type="checkbox"/> 재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기 타 사 항 : 고용효과 <input type="checkbox"/> 노동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균형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홍보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성인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자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가능성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관리 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무 ■
	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타 자 원 의 활 용	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관 계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관 계 기 관 및 단 체 협 의	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	● 시 산 하 기 관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■

「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최웅식의원 발의 조례(안) 검토 보고

'13.8.14. 최웅식의원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 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림

I 발 의 내 용

□ 조 례 명 :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(의안번호 1507호, '13.8.21. 발의)

□ 발의의원 : 최웅식(영등포구, 재정경제위원회) / 찬성의원 28명

□ 제안이유

-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, 재난·재해시 긴급 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,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부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

□ 주요내용

-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그 봉사단체(하부조직을 포함)로 하는 지원 대상 정의 규정(안 제2조)
- 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 협력(안 제3조).
 - 서울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4조).
 -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(안 제5조).
 -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(안 제6조).
 - 적십자사 회원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근거 마련(안 제7조)

II 조례안 검토

1 조례안의 위법성 여부 ➔ 적법

상위 법령의 규정 및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?

-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대한적십자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및 무상대부 자료제공 등에 대해 지원 등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
- 자원봉사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험가입과 관련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을 고려할 때 위법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

2 조례안의 합목적성 및 재정부담 여부 ➔ 재정부담 없음

국가 및 市의 정책방향에 부합하는지, 심대한 재정적 부담은 없는지 ?

《합목적성》

- 본 조례안으로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의 사업수행을 위한 활동지원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타당하나,
 - 조례안 제4조, 제5조, 제6조, 제7조와 같이 이미 상위법령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는 동일, 유사한 사항을 재차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

《재정부담》 없음

③ 조례안 내용 검토 → 대한적십자사의 정의 “수 정”

○ 조례안 제2조(정의) 제1호

“대한적십자사(이하 “적십자사”라 한다)”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그 봉사단체(하부조직)을 포함한다를 말한다.

○ 조례안 제2조(정의) 제1호 수정안

“대한적십자사(이하 “적십자사”라 한다)”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~~그 봉사단체(하부조직)을 포함한다(삭제)~~를 말한다.

《검토내용》

- 우리시에서 재정적,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가 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서 법인격을 갖는 대한적십자사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에서는 대한적십자사와 그 봉사단체(하부조직)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
- 대한적십자사의 봉사단체와 하부조직은 대한적십자사 내규로 정하고 있는 바 재정적, 행정적 지원대상의 범위를 상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대상에 비해 적십자사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음
- 향후 대한적십자사 관할 조직 범위에 대한 논란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 규정하고 있는 “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”로 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Ⅲ 종합 의견 → 수정가결

- 본 조례 안은 예산 및 기타 행정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,
- 제2조 제1호과 관련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

의원발의 조례안 검토의견서		주요 검토사항(해당사항에 체크)	
제 명	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(의안번호 : 1507호)	사전 보고 단계	시장 / 부시장 / 실본부국장
		입법의 필요성	필요 / 불필요
발의의원	최웅식(새)	발의 동기	민원해결 / 자체발굴 / 알법
		상위법 위반여부	위반 / 적법
주관부서	복지정책과 (담당자 : 박진용, 2133-7315)	민원·갈등가능성	있음 / 없음
		재정지출 증가여부	증가 / 해당없음
상임위	보건복지위원회	조직인력 변경여부	변경 / 해당없음
		규제 신설강화여부	신설 / 강화 / 해당없음
		관련부서 협의 여부	예산담당관(완료 / 진행중)
			행정과(완료 / 진행중)
			자산관리과(완료 / 진행중)
			소방방재본부(완료 / 진행중)
		보건의료정책과(완료 / 진행중)	
		부서 검토의견	수용 / 수정의결 / 보류

주요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대한적십자사 서울지사와 그 봉사단체(하부조직을 포함)로 하는 지원 대상 정의 규정(안 제2조) ○ 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서울시의 적극 협력(안 제3조).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서울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 마련(안 제4조). -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(안 제5조). -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(안 제6조). - 적십자사 회원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근거 마련(안 제7조)
주요 검토 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본 조례 안은 예산 및 기타 행정처리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, ○ 제2조 제1호와 관련하여는 보조금 지원 대상의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보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. ○ 조례안 제2조(정의) 제1호 수정의결 요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원안 <div data-bbox="311 1630 1436 1736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“대한적십자사(이하 “적십자사”라 한다)”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그 봉사단체(하부조직)을 포함한다를 말한다.</p> 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수정안 <div data-bbox="311 1803 1436 1908"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"> <p>“대한적십자사(이하 “적십자사”라 한다)”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외 그 봉사단체(하부조직)을 포함한다(삭제)를 말한다.</p> </div>
향후 계획 부서 의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필요시 수정안에 대해 상임위 등과 협의 진행 추진 - 수정의결

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최웅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07
----------	------

발의년월일 : 2013년 8월 21일

발 의 자 : 최웅식·이행자·전철수·공석호의원(4명)

찬 성 자 : 남재경·김상현·고만규·강감창·이상묵

이정찬·金光壽·유광상·정용림·이순자

조상호·박진형·김태희·오필근·정세환

김희전·양준욱·김정중·이상호·문상모

김종욱·김형식·김생환·임형균·인택환

김제리·김정재·金勇錫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인도주의 운동을 전개하고, 재난·재해시 긴급 구호로 사회안정에 기여하고, 어려운 이웃을 위한 생계지원 활동과 봉사활동을 추진해 온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부의 활동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토록 함(안 제3조).

나. 서울시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 및 자료 제공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(안 제4조).

다. 시장은 적십자사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.

라.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.

마. 적십자사 회원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등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(안 제7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대한적십자조직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자원봉사 활동기본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「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.
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에 따라 헌신·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대한적십자사(이하 “적십자사”라 한다)”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와 그 봉사단체(하부조직을 포함한다)를 말한다.
2. “적십자사 봉사회원”이란 적십자사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.
3. “적십자사 사업”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.

제3조(시민의 책무) 서울특별시민은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세계평화와 인류의 복지에 공헌해 온 적십자사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원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활동지원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
2.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
3. 보건의료·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
4.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
5.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
6. 「대한적십자사 조직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

- 7. 이산가족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
 - 8.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
 - 9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
- 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,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.

제5조(공유재산의 무상 대부)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「지방재정법」,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,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 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.

제6조(보조금의 지급 등) ① 시장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사업계획서
2.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
3.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

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, 교부,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조례」와 「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」를 준용한다.

제7조(보험가입)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적십자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.

제8조(표창) 시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.

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